

IFRS 적용실무 해설 (7)

이 자료는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의 각 주제별 담당자들이 해당 이슈별로 사례를 정리한 내용이며, 향후 2~3년 간 IFRS 도입시점까지 이슈를 주제별로 소개할 계획이다. <편집자 註>

1. 민간투자사업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211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적용되는 이 해석서는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대해서 다루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동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1호 '건설계약'에 따라 진행기준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 이 때, 시행대가의 회수방식에 따라 현금 또는 금융자산을 받을 무조건부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인식하며, 운영기간동안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부가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 (2)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의 통제권을 갖지 않고, 운영권만 갖게 되므로 사회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의 유형자산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의 정의회신은 민간투자사업 중 BTL 사업에 대해서는 제2112호와 같이 건설기간동안 수익을 인식하나, 또 일부의 정의회신에서는 건설기간동안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지 않고 건설중인 자산으로 인식하고, 기부채납시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제2112호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시행자는 고속도로 건설을 2년내에 완공하고 8년동안 이를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또한, 실시협약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8차연도 말에 고속도로를 재포장해야 하며, 실시협약은 10차연도에 종결된다. 사업시행자는 추정한 원가는 다음과 같다.

| | 연 도 | 금 액 |
|-----------|------|-----|
| 건설서비스 | 1 | 500 |
| | 2 | 500 |
| 운영서비스(매년) | 3~10 | 10 |
| 도로 재포장 | 8 | 100 |

사업시행자는 건설대가를 원가 + 5%로 추정하고 있다. 실시협약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도로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업허가자는 최소한 700의 수익과 6.18%의 이자수익을 보장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통행 대수가 일정할 것으로 예상, 3차연도부터 10차연도까지 매년 200의 통행료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차입원가를 자본화할 것이며(33%만 자본화된다고 가정), 이자율은 6.7%라고 가정한다. 현금흐름은 매년도말에 발생한다.

이 때 각 회계연도의 금융자산과 무형자산은 얼마인가?



■ 사업시행자의 대가를 구분

사업허가자로부터 현금을 받을 권리와 도로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받을 권리를 제공한 서비스의 공정가치에 따라 두 개의 요소로 구분한다.

〈표 1〉 금융자산과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 | | 합계 | 금융자산 | 무형자산 |
|----------------------|----------------|-------|------|------|
| 1차연도 건설서비스로 인한 수익 | (500 x (1+5%)) | 525 | 350 | 175 |
| 2차연도 건설서비스로 인한 수익 | (500 x (1+5%)) | 525 | 350 | 175 |
| 총 건설서비스로 인한 수익 | | 1,050 | 700 | 350 |
| 수취채권에 대한 유효이자(6.18%) | | 22 | 22 | |
| 자본화된차입원가(표 4 참조) | | 11 | - | 11 |
| 사업시행자가 받는 대가의 총공정가치 | | 1,083 | 722 | 361 |

■ 금융자산의 측정

사업시행자는 사업허가자로부터 건설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최소한 700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2차연도까지 건설서비스가 완료되므로, 1차연도에 50%의 건설서비스가 제공, 2차연도에 50%건설서비스가 제공되며, 700을 받을 권리도 건설서비스의 진행정도에 따라 1차연도에 350, 2차연도에 350이 발생한다. 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 제1039호에 따르면 대여금이나 수취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 원가로 측정되므로, 건설기간 말인 2차연도말의 수취채권의 장부가액은 유효이자율 6.18%에 따라 이자수익 22가 발생하여 722가 된다. 수취채권에 대해서 3차연도부터 일정금액을 회수하여 10차연도에 수취채권의 기말잔액이 0이라고 가정하면, 매년 회수하는 현금이 117로 계산된다.

〈표 2〉 금융자산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기초잔액 | | 350 | 722 | 650 | 573 | 491 | 404 | 312 | 214 | 110 |
| 건설서비스 | 350 | 350 | | | | | | | | |
| 기초이자수익(6.18%) | | 22 | 45 | 40 | 35 | 30 | 25 | 19 | 13 | 7 |
| 현금회수 | | | (117) | (117) | (117) | (117) | (117) | (117) | (117) | (117) |
| 기말잔액 | 350 | 722 | 650 | 573 | 491 | 404 | 312 | 214 | 110 | - |

■ 무형자산의 측정

도로 이용자로부터 받을 통행료수익에 대한 권리는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며, 6.7%로 차입한 차입원가는 자본화된다. 또한,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상각된다.

〈표 3〉 무형자산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기초잔액 | | 175 | 361 | 316 | 271 | 226 | 181 | 136 | 91 | 46 |
| 건설서비스 | 175 | 175 | | | | | | | | |
| 차입원가(*) | | 11 | | | | | | | | |
| 상각 | |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 기말잔액 | 175 | 361 | 316 | 271 | 226 | 181 | 136 | 91 | 46 | - |

(*)이 때 자본화된 차입원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이 중 자본화는 33% 만 되었다고 가정하므로 $34 \times 33\% = 11$ 로 계산된다.

〈표 4〉 자본화된 차입원가

| | 1 | 2 |
|------------|-------|-------|
| 공사원가 지출액 | (500) | (500) |
| 차입원가(6.7%) | - | (34) |
| 현금유출액 | (500) | (534) |

작성 :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김인영 회계사

2. 최초채택 - 연결범위에서 제외되는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 결정

K사는 2011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을 목표로 2010년 1월 1일의 개시 재무상태표를 준비 중이다. K사는 S사의 지분을 31% 소유하고 있으면서 최대출자자이므로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종속기업으로 간주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왔다. K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검토를 수행하던 중 S사는 종속기업이 아닌 관계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개시 재무상태표에서 K사는 S사에 대한 관계기업 투자(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피투자회사의 지분을 30%를 초과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종속기업으로 간주되어 연결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에서는 지배력이 존재하면 연결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결권을 50% 초과 소유하고 있거나 재무 및 영업정책에 대한 의결권 위임, 이사회구성원의 과반수 임명권 또는 이사회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지배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 사례와 같이 의결권을 30% 초과 소유한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현행 기준상에서는 종속기업으로 간주했다 하더라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하에서는 피투자회사에 대한 실질 지배력이 없다면 연결대상에서 제외될 것이고,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계기업으로 분류될 것이다.

관계기업 투자로 분류되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8호 “관계기업 투자”의 적용을 받는다. 전환일 시점

에 관계기업의 장부금액은 다른 면제조항을 적용 받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기준서 제1028호에 따른 요구사항을 소급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소급적용을 위해서는 상당 기간 전에 취득한 관계기업에 대하여 취득일 시점의 순공정가치를 재측정하여 투자주식과 관련된 영업권을 산정하여야 하며, 취득 시점 이후의 지분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투자주식장부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실무상 거의 불가능 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러한 최초 채택시의 작성 부담 완화 및 실무적 적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서는 여러 가지 면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면제규정 중 사업결합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전환일 시점의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의 간주원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사업결합의 면제조항은 사업결합뿐만 아니라 과거 취득한 관계기업, 조인트벤처 지분에 대해서도 적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기준서 제1101호 B3). 또한, 사업결합 면제 규정은 관계기업에서 종속기업으로의 분류 또는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의 분류 시에도 적용된다.

사업결합 면제 규정에 따르면, 과거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자산, 부채를 재측정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에 계상하였던 장부금액을 사업결합 시점의 취득원가로 인정받게 된다(기준서 제1101호 B2(5)). 따라서, 지분 취득일 시점에 연결재무제표에 계상된 피투자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그 시점의 관계기업의 식별 가능한 순자산가액으로 간주한다. 물론 기준서 제1101호 B2(3)~(6)의 요구사항은 관계기업의 순자산가액 결정시에도 적용된다. 또한, 영업권의 장부금액은 전환일에 과거 회계기준에 따른 영업권 가액에서 B2(7)의 사항을 조정한 금액이 되며, 이 부분은 지분법투자주식의 장부금액 중 영업권(투자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K사의 전환일 시점의 S사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은 ①과 ②의 합계액으로 결정될 것이다.

- ① (취득일 시점의 연결재무제표상 피투자회사의 순 자산가액 + B2(3)~(6)의 조정 사항 반영)* 투자지분율(31%)
- ② 전환일 시점의 연결재무제표상 영업권 + B2(7)의 조정 사항 반영

전환일 시점에 관계기업 투자지분에 포함된 영업권에 대하여 B2(7)(다)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과 같은 별도의 손상검사는 요구되지 않을 것이나 관계기업 투자지분가액이 전환일 시점에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산 및 부채의 사업결합면제 조정에 대한 상세 내용은 7월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사업결합 면제규정의 적용”을 참고)

작성자 :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엄경순 회계사

3. 당기손익인식항목의 분류변경

2008년 10월 13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이하 IASB)는 금융상품의 분류변경과 관련한 IAS 39 및 IFRS 7(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 및 제1107호)의 개정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개정사항에 대한 배경 및 구체적인 개정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정의 배경

개정내용이 반영되기 전 금융상품의 분류변경에 대한 내용은 기준서 제1039호 단락 50~54에 설명되어 있으며, 이 중 단락 50에서는 금융상품은 보유기간 또는 발행 이후 기간 중 당기손익항목으로 분류변경하거나, 당기손익항목에서 다른 범주로 분류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in rare circumstances”)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중 단기매매항목을 다른 범주로 분류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IASB는 최근 금융시장의 어려움으로 인해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에서 현재 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기손익인식항목의 분류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제고해 줄 것을(가능하면 그러한 규정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특별히 현재 미국 회계기준(이하 US GAAP)에서는 당기손익인식항목의 분류변경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US GAAP과 국제회계기준의 차이점을 없애기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US GAAP(SFAS 115 Accounting for certain investments in debt and equity securities)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단기매매항목의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혹은 단기매매항목의 범주로의 분류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으며, 실무적으로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번 개정된 내용에서는 이와 같은 US GAAP의 내용을 수용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즉,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당기손익인식항목 중 단기매매항목을 다른 범주로 분류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 2008년 3분기 동안 발생한 금융시장의 어려운 상황이 예외적인 상황으로 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IASB는 그 사안의 급박성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분류변경에 대한 개정을 진행하게 되었다.

(2) 개정내용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정 전 기준서 제39호 단락 50에서는 당기손익인식항목의 분류변경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금융자산을 주로 단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재매입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더라도 더 이상 단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재매입할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다면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다른 범주로 분류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당기손익인식항목 중 단기매매항목에 대해서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다른 범주로 분류변경이 가능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상품의 분류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 1)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에만 당기손익인식항목의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분류변경할 수 있다. ((*)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으며,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2008년 3분기 신용위기로 인한 금융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적용 가능한 경우로 고려하고 있음)
- 2) 최초 인식시점에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는 것이 요구되지 않았더라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였을 단기매매항목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예측가능한 미래 또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을 경우 다른 범주로 분류변경할 수 있다.

또한, 최초 인식시점에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였을 매도가능항목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은, 기업이 예측가능한 미래 또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 매도가능항목의 범주에서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범주로 분류 변경할 수 있다.

IFRS 7에서는 위와 같은 분류변경에 대한 상세한 내용(금액효과 및 분류변경 이유 등)에 대한 공시요구사항이 추가되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추가되었음.

- 1) 범주별로 분류변경된 금액 및 당해 보고기간과 과거 보고기간에 분류변경된 모든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제거되기 전까지 매 보고기간마다 공시)
- 2)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한 분류변경일 경우, 그 상황이 예외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과 상황
- 3) 분류변경된 보고기간의 경우, 해당 금융자산에 대해 그 보고기간 및 과거 보고기간에 인식된 공정가치 손익(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
- 4) 분류변경되지 않았다면 인식되었을 공정가치 손익(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
- 5) 유효이자율과 금융자산의 분류변경일 현재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는 추정 현금흐름 

작성 :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김수완 회계사